의 안 번 호		제54호	
의	결	2014. 10. 23.	
연 월	일	(제19회)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오병혁	
제출 연월일	2014. 10. 23.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종이수입증지 사용이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대체되면서 종이 수입증지 발행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규칙은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통합함.

3. 주요내용

- □ 주요 내용
 - 수입증지 판매인에 관한 규정삭제
 - 종이수입증지의 사용중단으로 판매인 지정의 필요성이 없어짐
 -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판매수수료, 감독, 교환 등 관련 규정 삭제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별첨

- 입법예고(2014.9.26. ~ 2014.10.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재무과				
연 락 처	(02) 3423 - 5265			